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명석 의원외 3명

2. 제안이유

○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조건 완화(안 제3조)

- “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”을 “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”으로 한다.
- 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.(신설)

나.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(안 제4조)

- 참전명예수당 “월 2만원”을 “월 4만원”으로 인상
- 사망위로금 “15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4조 및 제6조 제1항
다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예산반영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발의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 합니다.

○ 현행 조례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